

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 
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사유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  
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 
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 
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자 함.

### 2. 관계법령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, 제41조, 제42조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

### 3.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매장(객실)면적에 따라 세분화 함(안 별표1)
-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(안 별표 1)
-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 
수 있음(안 제5조)

-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, 포상금을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(안 제8조 및 제9조)
-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%를 감액할 수 있음(안 제8조)

#### 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건은

-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, 이의신청 및 감액조항등 과태료 처분행위 근거마련과 신고포상금제도의 생활화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기정착과 자율적인 주민참여확대를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므로써,
- 근검절약 하고자 하는 주민정서와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관련법령과 환경부지침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